



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

생산체계 개편 제도 시행일

공공공사 : **2021.1.1** / 민간공사 : **2022.1.1**

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방식의 종합공사 수행 및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금은 2024.1.1.부터 시행

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*, 유튜브*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국토부 홈페이지 : 정책자료 ▶ 정책정보 ▶ 건설 ▶ 110번, 111번,

* 유튜브 : 건설 CEO를 위한 리더스 브리핑

| 강의를동영상, 설명자료, FAQ 포함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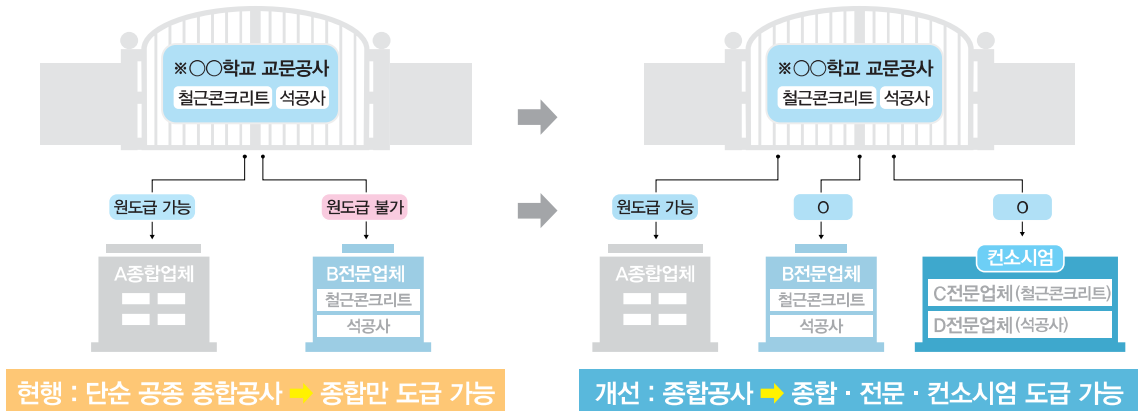
1 생산체계 개편 추진 배경

현황 및 문제점

- '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, 40여년간 종합·전문사업자간 업무 영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구조 유지 (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), 2개 공종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건설사업자만, 전문공사 원·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만 가능하도록 업역을 규제
- 종합건설사업자는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, 입찰 영업에 치중하며,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
- 전문건설사업자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하도급에 의존,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로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확산
- 발주자의 건설사업자 선택권을 제약

개/선/방/안

-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'칸막이'를 없애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구조를 전면 개편



2 건설공사의 시공자격(법 제16조제1항)

원칙 건설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(제1항)

예외 다음의 경우,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 가능

-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원도급 가능한 경우
 - 2개 업종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(제1항제1호)
 - 2인 이상의 전문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·하자 책임구분 등을 고려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도급 받는 경우(제1항제3호)
 - ※ 전문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공사 원도급참여는 '24. 1. 1.부터 허용(부칙 제1조제3항)
-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도급 가능한 경우
 - 종합업종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전문공사의 원·하도급 허용(제1항제4호)
 - ※ 종합업체의 2억원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'24.1.1.부터 허용(부칙 제1조제4항)



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

-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하는 경우(제1항제2호)

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 하고,
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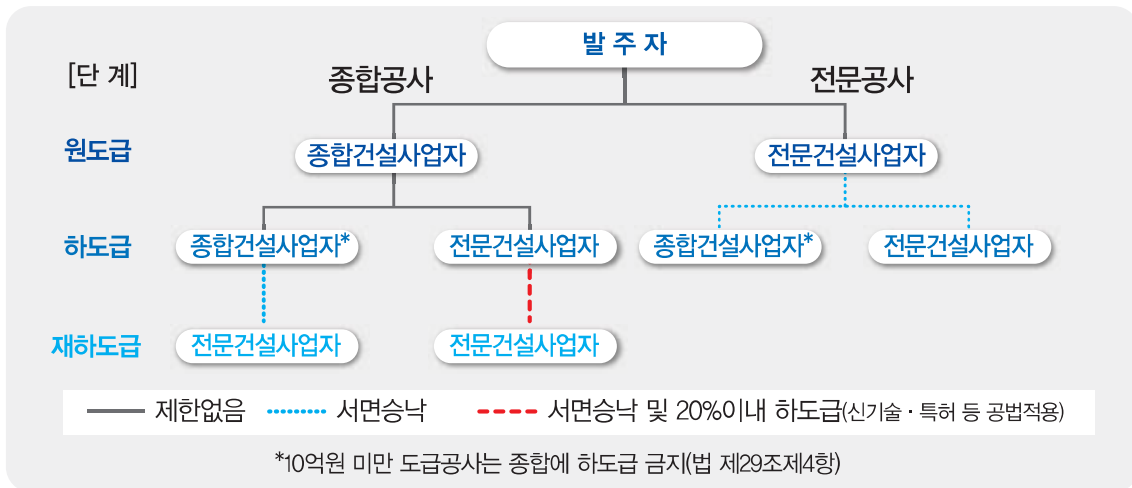
3 종합·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(법 제16조제3항)

- 상대 업역진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(수의계약 : 계약체결 전)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
- 이 경우 발주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확인하여야 함
- ※ 다만,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는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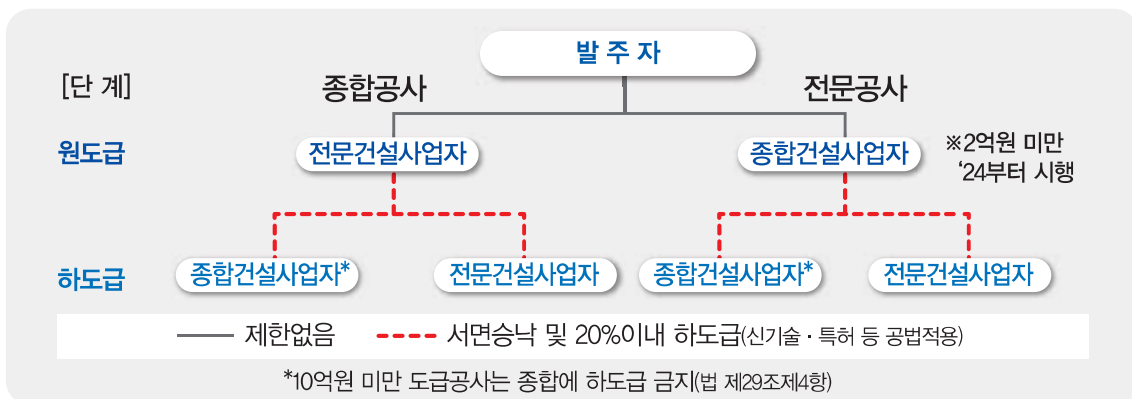
4 원하도급 체계 개편 주요내용

개편된 원하도급 체계도

① 본(本)업역 도급시 : 최대 3단계



② 상대업역 도급시 : 최대 2단계



하도급 제도 개편(법 제29조) 주요내용

① 일괄하도급 금지(제1항)

-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
 - 다만, 수급인이 계획,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건설사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
 - ① 전문공사를 업종별로 분할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 하는 경우
 - ②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해지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

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(종합건설업체 포함)의 하도급 제한(제2항)

- 다만, ① 발주자 서면 승낙 및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*
(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)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 가능
 - * 하도급 하려는 공사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금액의 2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·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

③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에 대한 하도급 제한(제5항)

- ① 발주자 서면승낙 및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*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 가능
 - * 하도급 하려는 공사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금액의 2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·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

④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에 대한 하도급(제2항, 제4항)

-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종합공사에 대해 하도급 가능
 - 다만,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(전문업체를 포함) 받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(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)

⑤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제한(제3항)

- 종합건설사업자가 재하도급 가능한 경우 :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,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
- 전문건설사업자가 재하도급 가능한 경우 : ① 수급인의 서면승낙* 및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*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하도급 가능
 - * i) 하도급받은 공사의 20%이내, ii) 신기술·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, iii) 하수급인의 재하도급대금 지급보증(또는 직불)과 재하수급인이 사용한 자재·장비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합의서 작성·제시

⑥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를 해야 하는 대상(제6항)

-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
- 전문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을 서면승낙한 수급인
 - * 통보예외 : 발주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는 것을 서면승낙한 경우